

취업사실 신고서

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신고인 | 성명 | 생년월일 | |
| | 퇴직 전 소속 | 직위(직급 등) | |
| | 퇴직일 | 휴대전화번호 | |
| | 주소 | | |
| 취업사실 | 취업 기관명 | 직위(직급 등) | |
| | 취업일 | 취업경로 | |
| 과거 취업사실 | 취업 기관명 | 직위(직급 등) | 근무기간 |
| | | | ~ |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9조의4제2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

첨부서류 재직증명서, 위촉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-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
- 과거 취업기관은 최종 퇴직일 이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했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, 해당 기관명과 직위(직급), 근무기간(취업일과 퇴직일)을 적으십시오.

업무 처리절차

